

서울특별시 금천구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

1. 제안이유

금천구치매안심센터 위탁기간이 2019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도모하기 위해 재계약 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하여 추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시설개요

시 설 명	위 치	시설면적(m ²)	종사자수	위탁기간	수탁기관
금천구 치매안심센터	시흥대로 123길11	748.1m ²	16명 (센터장 포함)	3년 (2017. 1. 1. ~ 2019. 12. 31.)	고려대학교 구로병원

나. 주요위탁 내용

- 현재 위탁기간 : 2017. 1. 1. ~ 2019. 12. 31.(3년간)
- 위탁업무
 - ▶ 치매예방 및 인식개선, 조기검진 및 등록관리 사업
 - ▶ 지역자원 강화 및 통합관리 정보시스템 운영 사업 등
- 수탁기관 선정방법 : 재계약(기간 : 2020. 1. 1. ~ 2022. 12. 31.(3년간))

다. 민간위탁 추진 근거

- 치매관리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(위임과 위탁)
-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
- 서울특별시 금천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

라.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필요성

- 금천구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해온 기존 수탁 업체의 운영 유지로 원활한 센터 운영의 전문성 및 체계성 확보

관계법령

○ 서울특별시 금천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제4조(치매안심센터의 위탁)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 이라 한다)은 치매안심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치매관련 전문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.

③ 그 밖에 치매안심센터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. [본조신설 2019. 5. 9.]

○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

제4조(민간위탁사무의 기준) ① 법령에서 정한 구청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 <개정 2016.7.18>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<개정 2016.7.18>

4. 그 밖에 구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<개정 2016.7.18.>

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·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<개정 2016.7.18.>

③ 구청장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위임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장관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 다만,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. <신설 2009.12.24> <개정 2016.7.18.>